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년 3월 22일  
복지건설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년 3월 10일, 금천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23년 3월 10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4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 
제1차 복지건설위원회(2023년 3월 22일)
 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### 가. 개정이유

- 근거 상위법을 명시하고 지원 사업을 명확히 하며 지원센터의 지도점검 조항 등을 추가하는 등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, 교육 및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근거 상위법을 목적에 반영함(안 제1조)
-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함(안 제2조 및 제5조)
-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8조)
- 지원센터의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9조)

### 3. 관계법령

-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

#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추병수

나. 개정 이유

본 개정안은 상위법에 규정된 사항 및 지원사업 등을 추가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의원 발의되었음.

다. 주요 내용

- 1) 근거 상위법을 목적에 반영함(안 제1조)
- 2)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함(안 제2조 및 제5조)
- 3)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8조)  
교육청, 경찰청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근거를 마련함
- 4) 지원센터의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9조)  
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사항 등에 대한 지도 점검 근거조항을 규정함

라. 검토 의견

본 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따른 상위 법령의 근거 규정을 인용하여 지원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생략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